

제289회 임시회  
교 통 위 원 회

『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기업 글로벌 No.1 서울교통공사』  
**서울교통공사정관 개정(안) 보고**

---

2019. 8.



서울교통공사  
Seoul Metro

#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(안)

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가 개정('19.3.28)됨에 따라 현행 공사 정관 중 근로자이사에 관하여 일부 불일치한 용어를 개정함

## 1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('19.3.28. 시행)
- 「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정관) 제2항
- 제2019-6회 이사회회의결 (2019. 7.18.)

## 2 주요내용

- 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른 용어 통일
    - 근로자이사 및 근로자대표를 “노동자이사”와 “노동자대표”로 개정
- ※ 개정정관: 제11조(임원), 제12조(임기), 제17조(임원의 결격사유) 및 제22조(임·직원의 보수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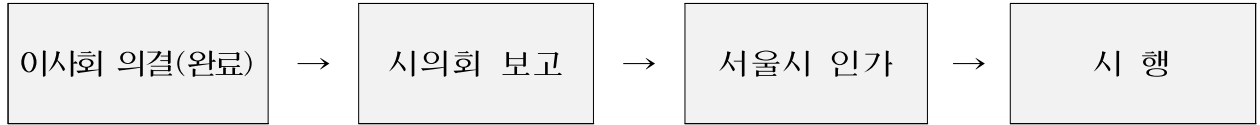
현행	개정(안)
근로자이사 근로자대표	노동자이사 노동자대표

### 《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요지 》

- 조례 명칭 변경: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로 개정
- 주요 내용: 근로자이사제→노동자이사제, 근로자이사→노동자이사, 근로→노동

### 3 행정사항

○ 개정절차



- 붙 임 : 1.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(안) 신·구대비표 1부.  
2. 제2019-6회 이사회 의결서 1부. 끝.

## 서울교통공사정관 일부개정(안) 신·구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	비 고
<p>제11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10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및 <u>근로자이사</u> 각 2명 포함) 및 감사 1인을 둔다.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당연직 :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의 공무원 2명</p> <p>2. 위촉직 : 세무 및 회계전문가, 공기업의 경영 및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, 시민 또는 <u>근로자대표</u>(공사채직자)</p> <p>제12조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근로자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	<p>제11조(임원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상임이사와 10인 이내의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및 <u>노동자이사</u> 각 2명 포함) 및 감사 1인을 둔다.</p> <p>② &lt;생략&gt;</p> <p>③ &lt;생략&gt;</p> <p>④ 비상임이사는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.</p> <p>1. 당연직 : 시장이 지정하는 시 소속의 공무원 2명</p> <p>2. 위촉직 : 세무 및 회계전문가, 공기업의 경영 및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, 지하철 운영과 관련되는 전문가, 시민 또는 <u>노동자대표</u>(공사채직자)</p> <p>제12조(임기)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,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. 이 경우 임원의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,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 다만, <u>노동자이사</u>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 발생 시 선출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야 한다.</p>	<p>「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」 개정에 따른 정관개정</p>

현행	개정(안)	비고
<p>제17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&lt;생략&gt;</li> <li>2. &lt;생략&gt;</li> <li>3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자(<u>근로자이사</u>만 해당)</li> </ol> <p>제22조(임·직원의 보수)</p> <p>③ <u>근로자이사</u>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<p>제17조(임원의 결격사유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&lt;생략&gt;</li> <li>2. &lt;생략&gt;</li> <li>3. 「근로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2호 및 「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」 제2조제2호에 의한 사용자(<u>노동자이사</u>만 해당)</li> </ol> <p>제22조(임·직원의 보수)</p> <p>③ <u>노동자이사</u>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·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	

【붙임2】

- 서울교통공사 -  
**제2019-6회 이사회(임시회) 의결서**

일시	2019.7.18.(목) 15:00 ~ 15:58	장 소	스마트안전통합상황실 (본사 5층)
소집자	의 장 김상범		
출석 이사	1. 사 장 김태호      2. 이 사 최정균      3. 이 사 오재강 4. 이 사 한재현      5. 이 사 김석태      6. 이 사 나상운 7. 이 사 이진선      8. 이 사 김미란      9. 이 사 박희석 10. 이 사 박원준		
결석이사	백일헌 재정기획관, 조중래 이사		
참 여 자	기획처장, 인사처장, 예산처장, 신교통사업처장, 법무팀장		

의안번호	의 안 제 목	소관부서	의결결과
제8호	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(안)	법무실	원안의결
제9호	인사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	인사처	철회
제9호	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	기획처	수정의결
제10호	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	예산처	원안의결

○ 의결주문

- 제8호 “서울교통공사 정관 일부개정(안)”은 요구 의결주문과 같이 “원안의결” 한다
- 제9호 “이사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(안)”은 이사회운영규정 제 15조 제4항 신설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“수정의결” 한다
- 제10호 “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(안)”은 요구 의결주문과 같이 “원안의결” 한다

위 의결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이사 연서 날인함.

2019년 7월 18일

의 장	김 상 범 (인)	김상범
사 장	김 태 호 (인)	김태호
이 사	최 정 균 (인)	최정균
이 사	오 재 강 (인)	오재강
이 사	한 제 현 (인)	한제현
이 사	김 석 태 (인)	김석태
이 사	백 일 현 (인)	불참
이 사	조 중 래 (인)	불참
이 사	나 상 윤 (인)	나상윤
이 사	이 진 선 (인)	이진선
이 사	김 미 란 (인)	김미란
이 사	박 희 석 (인)	박희석
이 사	박 원 준 (인)	박원준

위 결의를 확인함.

감 사 정 희 윤 (인) 정희윤